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24 선고 2020가단11863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C 주식회사

2. D

3. E

변론 종결2020. 9. 29.

판결 선고2020. 11. 24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,501,249원 및 그 중 97,022,781원에 대하여 2019. 5. 25.부터 2020. 8. 20.까지는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피고 1, 2: 다툼 없는 사실

피고 3: 자백간주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3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김상근

별지